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66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임종득 · 김태규 · 윤한홍
이상휘 · 박성훈 · 김정재
김용태 · 윤용근 · 서천호
김승수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3년으로”를 “30개월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복지 향상 및 복무환경 개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 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 교육소집기간 외에 <u>3년으로</u> 한 다.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u>30개월로</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복지 향상 및 복무환 경 개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공중보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u>